

1. 개정이유

첨단감시장비로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이를 전산처리하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첨단감시장비 및 전산망 운영 세부 규정 등을 정비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혼선이 있는 용어의 명확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의 수집·활용 및 전산망 구축·운영 규정
(안 제1조의3제2항 신설, 제1조의3제3항 개정)

- 첨단감시장비 개발, 전산망 구축·운영, 관측 자료 수집·생산·분석 및 자료 검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인재 양성 등 업무 명확화
-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나. 첨단감시장비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63조제3항제3호의3 신설)

다. 기체연료를 청정연료로 정의하는 것은 삭제하고 용어 명확화
(안 제43조, 별표 11의3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의 제목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을 “(환경위성 관측망 및 첨단감시장비의 구축·운영·활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과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처리 전산망(이하 “첨단감시장비 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장 및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첨단 감시장비의 개발
2. 첨단감시장비 전산망의 구축·운영
3.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4. 첨단감시장비 관측 자료의 수집·생산·분석
5. 첨단감시장비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 사업
6.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7.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그 밖에 첨단감시장비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의 제목 “(청정연료의 사용)”을 “(기체연료의 연료의 사용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정연료””를 ““기체연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청정연료”를 “기체연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정연료의”를 “기체연료의”로, “청정연료 외”를 “기체연료 외”로 한다. 제63조제3항제3호의3을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법 제3조의3에 따른 첨단감시장비 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

제66조의2제6호 중 “청정연료”를 “기체연료”로 한다.

별표 11의3의 제목 중 “청정연료 사용 기준 (제43조 관련)”을 “기체연료 사용 기준 (제43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의3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각 목 및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정연료”를 “기체연료”로 하고, 제2호 가목 중 “청정연료”를 “기체연료”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및 2) 표의 사용연료란 중 “청정연료”를 각각 “기체연료”로 하며, 같은 호 가목2) 비고 제1호 중 “청정연료의”를 “기체연료의”로, “청정연료 사용”을 “기체연료 사용”으로 한다.

별표 11의3 제2호 나목1) 중 “청정연료 또는”을 “기체연료 또는”으로, “청정연료만”을 “기체연료만”으로, “청정연료의”를 “기체연료의”로 하

며, 같은 호 다목 중 “청정연료”를 “기체연료”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청정연료의”를 “기체연료의”로, “청정연료만”을 “기체연료만”으로 한다.

별표 11의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정연료를”을 “기체연료를”로, “청정연료 외”를 “기체연료 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청정연료”를 “기체연료”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를 “기체연료 사용 시(기체연료”로 하고, 마목 중 “청정연료”를 “기체연료”로 한다.

별표 11의3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비고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비고 중 “청정연료”를 각각 “기체연료”로 하며, 제5호 중 “청정연료”를 “기체연료”로 하고, 제6호가목 중 “청정연료 사용”을 “기체연료 사용”으로, “청정연료 또는”을 “기체연료 또는”으로 하며, 제7호가목 중 “청정연료만”을 “기체연료만”으로, “청정연료와”를 “기체연료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청정연료”를 각각 “기체연료”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 · 운영 등) ① (생 략) <신 설>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 및 첨 단감시장비의 구축·운영·활 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첨단감 시장비의 운영 및 정보의 수집 · 활용과 첨단감시장비 관측정 보 처리 전산망(이하 “첨단감시 장비 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 ·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장 및 생활주변 대기오 염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첨단감시장비의 개발 2. 첨단감시장비 전산망의 구축 · 운영 3.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연 구개발 4. 첨단감시장비 관측 자료의 수집·생산·분석 5. 첨단감시장비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 증 및 개선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 ① 법 제4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에 관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3에 따른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한다)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6.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7.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 정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그 밖에 첨단감시장비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제1항 및 제2항-----

-----.

제43조(기체연료외 연료의 사용금지 등) ① -----

----- “기체연료”-----

명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청정연료의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열 공급시설 등에 대하여는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 3의2. (생략)

<신설>

-----.

② -----

기체연료-----

-----.

③ ----- 기체연료의 -----

----- 기체연료 외-----
-----.

제63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법 제3조의3에 따른 첨단

	<u>감시장비 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u>
<u>3의3.</u> (생략)	<u>3의4.</u> (현행 제3호의3과 같음)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 후에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
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	-----
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	-----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
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3조 및 별표 11의3에 따른	6. -----
<u>청정연료</u> 의 사용: 2014년 1월	<u>기체연료</u> -----
1일	--
6의2.·6의3. (생략)	6의2.·6의3. (현행과 같음)